

# 학교법인 성지학원

[2021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직이사	8인	2인
참석이사	8인	0인

1. 회의일시: 2021년 8월 24일(목) 14:00~16:10 (소집통지일: 2021년 8월 13일)

2. 회의장소: 부산외대 회의실(F관 6층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8인 (이사장 정해린

이사 오지섭, 윤효선, 이복수, 윤수길, 하수권, 김요한, 정연승)

○ 불참임원: 2인 (감사 안창엽, 정혁주)

○ 배석인원: 4인 사무국장 서정학,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 이종문  
행정지원실장 신현상, 성지고등학교 행정실장 정효채

4. 안건

○ 제1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 개편(안)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 제4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안)

○ 제5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제6호 의안: 정관 개정(안)

○ 기타: 간서명 이사 선임

5. 개회선언

14시 00분에 정해린 이사장께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 이 사회 개최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21학년도 제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이사장의 요청으로 이복수 이사의 기도인도 후 회의가 시작되다>

6. 안건심의

<간서명>	정 해린	이 복수	정 연승
-------	------	------	------

□ 제1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종문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이종문 기획처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 2) 이종문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임용절차를 거쳐 상정된 전임교원 임용(면직, 정년보장, 승진, 재임용)안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8명 면직(면직 임용일: 2021.08.31.)

연번	직종	소속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위	최초임용일	비고
1	전임교원A						정년퇴직
2	전임교원A						정년퇴직
3	전임교원A						정년퇴직
4	전임교원A						정년퇴직
5	산학협력 중점교원						의원면직
6	산학협력 중점교원						의원면직
7	외국인 전임교원						의원면직
8	외국인 전임교원						의원면직

<간서명>	정해린	이복수	정연승
-------	-----	-----	-----

▶ 아래 1명 재임용 (재임용 계약기간 : 2021.09.01. ~ 2023.08.31.)

소속	성명	직종	현 직위	임용기간		심사 결과	사유
				현재	재임용		
교육중점 전임교원							

- 3) 오지섭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수길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 개편(안)

-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종문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대내외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체계적 정비, 조직 구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2021.9.1.자 대학 직제 개편(안)을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주요내용

가. 조직 신설개편 추진 배경과 목표

□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구조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 학령 인구 감소 및 대학 입학 시장 변화에 대응한 조직 구조의 슬림화
- 총장 중심 책임 경영 시스템의 강화
- 과도한 실, 원, 센터, 팀 운영과 업무 중복 및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 조직 구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조직 구조 상하체계(처, 실, 단, 원, 관, 센터, 팀)의 재정립과 업무 및 역할 규정
- 직무의 전문화(분업)와 업무량 조정
- 직무 기준 조직 구조의 통폐합 및 재조정

<간서명>	정해진	이 복수	정연승
- 3 -			

## 나. 부처별 폐지, 통합, 신설, 변경 현황

### ■ 부처 폐지, 통합, 신설 : 19개 부처 축소

	폐지(19)	통합 축소(9 : 15→6)	신설(9)
부총장	• 대외부총장		
실	• 감사실 • 대외협력홍보실 • 고교협력실		
단	• 청해진사업단		
원	• 교육연수원 • 국제언어연구원 •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 • 특수외국어교육원 • 글로벌융합교육원 • 글로벌외국어교육원 • 교수학습개발원		• 교육개발원 • 진로개발원
센터	• 미래산업연계교육센터 • 한-인니EM연구센터 • 지구촌캠퍼스센터 • 부산외대스포츠센터 • 통역번역센터	• 다문화-사회통합센터 (만오다문화센터+만오사회통합센터) • 진로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 + 진로개발) • 글로컬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 해외취업센터 + 인공지능s/w지원센터) • 글로컬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 + 글로컬마케터양성)	• 외국어교육센터 • 융합교육센터 • 이러닝센터 • 교수학습개발센터
팀	• 교육혁신팀	• 교육사업팀 (글로벌교육사업팀+교육사업팀) • 산학협력팀 (산학기획팀+산학연구팀+산학재무팀 +산학감사팀)	• 비서팀 • 예산팀 • 국제학생지원팀
관	• 안전방재관		

### ■ 부처(소속) 변경 : 9개

대상 부처	기존 부처	이동 부처
• 학생상담센터 • 대학인권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교학처	학생진로처(진로취업처)
• 사회기여센터	교학처	만오지역협력원(만오교육문화원)
•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실	비서실(홍보팀)
• 감사팀	감사실	기획처
• 학생복지팀	교학처	학생진로처(진로취업처)
• 대학혁신정책사업팀	기획처	대학혁신사업단

### ■ 명칭 변경 : 10개

• 교학처	→ 교무처	• 대외협력홍보팀	→ 홍보팀
• 진로취업처	→ 학생진로처	• 대학혁신정책사업팀	→ 대학혁신사업팀
• 만오교육문화원	→ 만오지역협력원	• 국제교류팀	→ 대외교류협력팀
• 인문글쓰기교양교육센터	→ 기초교양교육지원센터	• 기획예산팀	→ 기획조정팀
• 체험인성교육센터	→ 인성체험교양지원센터	• 취업지원팀	→ 진로취업팀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은 제3호 의안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함.

<간서명>	정 해인	이 복수	정 연승
-------	------	------	------

3) 이복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연승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지원실장과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신현상 행정지원실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2) 행정지원실장과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사회 의 의결이 필요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아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총무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사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 승인에 따른 2021년 단체협상 후속조치 (신 인사제도 반영)
- 주요 내용 :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에 따른 직급분류체계 반영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3조(초임 직급 및 급여) ① 신규채용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부여한다. 1. 일반직 : G3(담당행정원)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초임 직급 및 급여) ① (현행과 같음)  1. 일반직 : P6(주무담당관)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승진임용) ① (생략) ② 인사부서는 별표4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진대상자 자격요건 및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년) ① 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반직 가. G1 : 만 60세 나. G2 : 만 60세 다. G3 : 만 60세 2. 별정직 : G1의 정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	제23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1. 일반직 : 만60세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별정직 : 일반직의 정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간서명>	정 해인	이 복수	정 연승
			- 5 -

현 행	변 경
로계약에 의한다. <u>&lt;부칙 신설&gt;</u>	근로계약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21. 00. 0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직급분류		[별표 2] 직급분류	
일반직		일반직	
직급		직위명	
<u>G1</u>		책임행정관	
<u>G2</u>		선임행정원	
<u>G3</u>		담당행정원	
약칭		책임	
<u>P1</u>		책임관리관	
<u>P2</u>		책임행정관	
<u>P3</u>		선임행정관	
<u>P4</u>		주무행정관	
<u>P5</u>		선임담당관	
<u>P6</u>		주무담당관	

  

[별표 4] 직급별 승진 자격 요건	
<input type="checkbox"/> <u>(별첨)</u>	

  

[별표 4] 직급별 승진 자격 요건	
<input type="checkbox"/> <u>&lt;삭제&gt;</u>	

▶ 「직원연봉제급여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총무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사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 승인에 따른 2021년 단체협상 후속조치(신 인사제도 반영)
- 주요 내용 :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에 따른 연봉체계 반영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6조(기본급 결정) ① 2014. 3. 1일 전 신규 임용된 직원의 당해 연도 기본급 인상을은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2014. 3.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직원의 당해 연도 기본급 인상률은 전년도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인상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등급별 인상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기본급 결정) ① <u>직원의 당해 연도 기본급 인상률은 “직원연봉제급여 운영지침”에 따른다.</u> ② <u>&lt;삭제&gt;</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업적성과급 적용 기준) 당해 연도 업적성과급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4. 3. 1일 전 신규 임용된 직원의 당해 연도 업적성과급은 전년도 종합평가결과 및 부서평가결과를 세 개의 등급(S, A, B)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9조(업적성과급 적용 기준) (현행과 같음) 1. <u>직원의 당해 연도 업적성과급은 전년도 종합 평가결과를 세 개의 등급(S, A, B)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u>

<u>&lt;간서명&gt;</u>	<u>정 해진</u>	<u>이 복수</u>	정 연승
--------------------	-------------	-------------	------

현 행	변 경
<p><u>구분하여 적용한다.</u></p> <p><u>2. 2014. 3.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직원의 당해 연도 업적성과급은 전년도 업적평가결과 및 부서평가결과를 세 개의 등급(S, A, B)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u></p> <p><u>제10조(업적성과급 산정) ① (생략)</u></p> <p><u>1. 2014. 3. 1일 전 신규 임용된 직원의 업적성과급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급에서 S등급은 50%, A등급은 42.9%, B등급은 35.7%를 적용한다.</u></p> <p><u>2. 2014. 3.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직원의 업적성과급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급에서 S등급은 57.1%, A등급은 42.9%, B등급은 28.6%를 적용한다. 단, 신규 임용된 직원의 업적평가 등급은 A등급으로 한다.</u></p> <p><u>② 개인평가(종합평가 또는 업적평가)와 부서평가의 영역별 업적성과급은 제1항의 지급률을 적용한 업적성과급에서 개인평가 70%, 부서평가 30%로 배분한다.</u></p> <p><u>③ 제9조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영역별 업적성과급은 기본급의 14.3%를 지급한다.</u></p> <p><u>④ (생략)</u></p>	<p><u>2. &lt;삭제&gt;</u></p> <p><u>제10조(업적성과급 산정) ① (현행과 같음)</u></p> <p><u>1. 직원의 업적성과급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급에서 S등급은 50%, A등급은 42.9%, B등급은 35.7%를 적용한다.</u></p> <p><u>2. &lt;삭제&gt;</u></p> <p><u>② &lt;삭제&gt;</u></p> <p><u>③ &lt;삭제&gt;</u></p> <p><u>④ (현행과 같음)</u></p>
<u>&lt;부칙 신설&gt;</u>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개정 2021. 00. 00.)</p> <p>(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 「직원연봉제급여운영지침」 개정(안) [ 입안부서 : 총무팀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 승인(성지학원-294, 2021.07.07.)에 따른 2021년 단체협상 후속조치(신 인사제도 반영)
- 직원연봉제급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

○ 주요 내용

- 단체교섭 협약서 체결에 따른 연봉체계 반영
- 현행의 3단계 (G3→G1) 직급을 6단계 (P6→P1)로 직급 세분화에 따른 기본급 초임 및 인상률, 승진인상률 변경
- 2014.3.1. 채용기준으로 이원화된 연봉 산정 기준을 단일화로 통일

<간서명>	김 해진	이 복수	정 연승

<간서명>	정해진	이복수	정연승
- 8 -			

<간서명>	정해진	이복수	정연승
- 9 -			

<간서명>	정재진	이복수	정연승
- 10 -			

▶ 「직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기획예산팀]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개편(안) 참조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b>제2장 총장·부총장</b> <b>제5조(총장) ① (생략)</b> ②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u>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u> , 교학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b>제2장 총장·부총장</b> <b>제5조(총장) ① (현행과 같음)</b> ②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u>부총장</u> , 교학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b>제6조(부총장 등) ①</b> 이 대학교에 <u>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u> ,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③ 대외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④ 특임부총장의 자격, 임기 및 업무는 따로 정한다.	<b>제6조(부총장 등) ①</b> 이 대학교에 <u>부총장</u> ,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 <u>②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u> <u>③ &lt;삭제&gt;</u> ④ (현행과 같음)
<b>제3장 직속기관</b>	<b>제3장 직속기관</b>

<간서명>	정 해인	이복수	정 연승
- 11 -			

<p><b>제7조(직속기관)</b> ① 총장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 행정지원실,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산학협력단, <u>만오교육문화원</u>, <u>안전방재관</u>을 둔다.</p> <p>② <b>교학부총장</b> 직속기관으로 <u>교학처</u>, 기획처, 입학관리처,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을 둔다.</p> <p>③ <b>대외부총장</b> 직속기관으로 <u>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u>, <u>국제교류처</u>, <u>LINC+사업단</u>, <u>IPP사업단</u>, <u>청해진사업단</u>을 둔다.</p> <p>④ 직속기관의 하위기관은 [별표2]와 같다.</p>	<p><b>제7조(직속기관)</b> ① 총장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 만오지역협력원, 교육사업단, 산학협력단을 둔다.</p> <p>② <b>부총장</b> 직속기관으로 <u>교무처</u>, 기획처, 입학관리처, <u>학생진로처/대학일자리센터</u>, <u>국제교류처</u>, <u>행정지원실</u>,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u>IPP사업단</u>, <u>LINC+사업단</u>을 둔다.</p> <p>③ &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8조(보직)</b> ① ~ ④ (생략)</p> <p>⑤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⑥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⑦ ~ ⑧ (생략)</p> <p>⑨ <u>안전방재관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⑩ <u>교직과정부에 부장</u>을 두며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⑪ <u>고교협력실에 실장을</u> 두며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⑫ <u>지구촌캠퍼스센터에 권역별 파트장을</u> 둘 수 있으며 파트장은 교원, 직원으로 보하고, 보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8조(보직)</b>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⑥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⑨ &lt;삭제&gt;</p> <p>⑩ <u>교직과정운영과에 과장을</u> 두며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⑪ &lt;삭제&gt;</p> <p>⑫ &lt;삭제&gt;</p>
<p><b>제4장 대학원 및 대학</b></p> <p><b>제10조(대학)</b> ① (생략)</p> <p>② 만오교양대학에 만오교양대교학과, <u>인문·글쓰기교양교육센터</u>, 체험인성교육센터를 둔다.</p>	<p><b>제4장 대학원 및 대학</b></p> <p><b>제10조(대학)</b> ① (현행과 같음)</p> <p>② 만오교양대학에 만오교양대교학과, <u>기초교양교육지원센터</u>, <u>인성체험교양지원센터</u>를 둔다.</p>
<p><b>제11조(보직)</b> ① ~ ② (생략)</p> <p>③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b>제11조(보직)</b>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원(비전 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p>
<p><b>제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b></p> <p><b>제12조(부속기관)</b> ① 부속기관에 중앙도서관, 정보통신원, 교육사업단, 외성생활관, 언론사를 두며, 하위기관은 [별표3]과 같다.</p>	<p><b>제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b></p> <p><b>제12조(부속기관)</b> ① 부속기관에 정보통신원, 중앙도서관, 외성생활관, 언론사를 두며, 하위기관은 [별표3]과 같다.</p>

<간서명>	정 해	이 복수	정 연승
-------	-----	------	------

<p>② 중앙도서관, 정보통신원의 운영은 교학부총장이 총괄한다.      ③ 교육사업단, 외성생활관, 언론사의 운영은 대외부총장이 총괄한다.</p>	<p>② 부속기관의 운영은 부총장이 총괄한다.      ③ &lt;삭제&gt;</p>
<p><b>제13조(부속기관의 보직) ① (생략)</b>      ②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각 원에 원장을,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원장 및 센터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④ (생략)      ⑤ 교육사업단장은 평생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국제언어교육원장을 겸한다.</p>	<p><b>제13조(부속기관의 보직) ① (현행과 같음)</b>      ②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각 원에 원장을,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원장 및 센터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사업단장은 평생교육원장을 겸한다.</p>
<p><b>제14조(부설연구기관)</b> 부설연구기관은 [별표4]와 같이 두며, 기관의 운영은 <u>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u>장이 총괄한다.</p>	<p><b>제14조(부설연구기관)</b> 부설연구기관은 [별표4]와 같이 두며, 기관의 운영은 <u>산학협력단장</u>이 총괄한다.</p>
<p><b>제7장 기타</b>  <b>제20조(과제 운영)</b> 대학, 대학원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에는 과장을 두며 과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원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부칙 신설&gt;</b></p>	<p><b>제7장 기타</b>  <b>제20조(과제 운영)</b> 대학, 대학원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에는 과장을 두며 과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u>선임행정관 이상</u>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개정 2021. 00. 00.)</p> <p>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례)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선임행정원(G2) 중 주무행정관(P4)에 해당하는 자가 보직자로 임명된 경우 보직 자격을 선임행정관(P3)에 준하여 적용한다.</p>

현 행			
[별표2] 직속기관의 하위기관(신설 2020. 1. 17.) (개정 2020. 8. 25., 2020. 12. 22., 2021. 2. 5.)			
구분	직속기관	행정기관	지원기관
총장	교목실		
	비서실	경영지원팀	
	<u>행정지원실</u>	<u>총무팀, 캠퍼스관리팀, 재무팀</u>	
	<u>대외협력홍보실</u>	<u>대외협력홍보팀</u>	
	<u>감사실</u>	<u>감사팀</u>	
	<u>만오교육문화원</u>		<u>만오다문화센터, 만오사회통합센터</u>

<간서명>			정 연승
		- 13 -	

	<u>안전방재관</u>	
	<u>산학협력단</u>	<u>산학기획팀, 산학연구팀, 산학재무팀, 산학감사팀</u> <u>혁신창업지원센터, 한-인니EM연구센터,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u>
<u>교학부총장</u>	<u>교학처</u>	<u>학사지원팀</u> <u>교육혁신팀</u> <u>학생복지팀</u> <u>교직과정부</u> <u>글로벌융합교육원, 교수학습개발원(교수학습지원센터, 탄뎀교육센터, e-러닝센터), 글로벌외국어교육원, 교 육혁신IR센터</u> <u>학생상담센터, 대학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기여센터</u>
		<u>기획처</u> <u>기획예산팀</u> <u>대학혁신정책사업팀</u> <u>교원인사팀</u> <u>대학평가센터</u>
		<u>입학관리처</u> <u>입학관리팀</u> <u>고교협력실</u>
	<u>대학혁신사업단</u>	
	<u>특수외국어사업단</u>	<u>특수외국어교육팀</u> <u>특수외국어교육원</u>
	<u>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센터</u>	<u>취업지원팀</u> <u>취업지원센터, 해외취업센터, 진로개발센터, 글로벌마케팅성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인공지능s/w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u>
	<u>국제교류처</u>	<u>국제교류팀</u> <u>글로벌교육사업팀</u> <u>지구촌캠퍼스센터</u> <u>한국어문화교육원</u>
		<u>LINC+사업단</u> <u>LINC+사업팀</u> <u>미래산업연계교육센터</u>
	<u>IPP사업단</u>	<u>IPP사업팀</u>
	<u>청해진사업단</u>	

#### 변경

[별표2] 직속기관의 하위기관(신설 2020. 1. 17.) (개정 2020. 8. 25., 2020. 12. 22., 2021. 2. 5., 2021. 00. 00.)

구분	직속기관	운영기관	행정부서
<u>총장</u>	교목실		
	비서실		<u>비서팀, 홍보팀, 경영지원팀</u>
	<u>만오지역협력원</u>	<u>사회기여센터, 다문화·사회통합센터</u>	
	<u>교육사업단</u>	<u>평생교육원</u>	<u>교육사업팀</u>
	<u>산학협력단</u>	<u>혁신창업지원센터</u>	<u>산학협력팀</u>
<u>부총장</u>	<u>교무처</u>		<u>학사지원팀, 교직과정운영과</u>
		<u>외국어교육센터</u>	
		<u>융합교육센터</u>	
		<u>교수학습개발센터</u>	
		<u>교육혁신IR센터</u>	
	<u>기획처</u>	<u>이러닝센터</u>	
		<u>대학평가센터</u>	

<u>&lt;간서명&gt;</u>	<u>정 해진</u>	<u>이 복수</u>	<u>정 연승</u>
--------------------	-------------	-------------	-------------

구분	직속기관	운영기관	행정부서
학생진로처/ 대학일자리센터	입학관리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교원인사팀, 감사팀
			입학관리팀
			학생복지팀
		대학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취업팀
	진로 개발원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글로컬취업지원센터	
		글로컬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대외교류협력팀, 국제학생지원팀
행정지원실			총무팀, 재무팀, 캠퍼스관리팀
대학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특수외국어사업단			특수외국어교육팀
IPP사업단			IPP사업팀
LINC+사업단			LINC+사업팀

#### 현 행

[별표3] 부속기관(신설 2020. 1. 17.)

구분	부속기관	행정기관	지원기관
교학부총장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팀	정보보호센터
	언론사		
대외부총장	교육사업단	교육사업팀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국제언어교육원, 통역번역센터, 부산외대스포츠센터
	외성생활관		

#### 변 경

[별표3] 부속기관(신설 2020. 1. 17.)(개정 2021. 00. 00.)

구분	부속기관	행정기관	지원기관
부총장	정보통신원	정보통신팀	정보보호센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외성생활관		
	언론사		

#### 현 행

[별표4] 부설연구기관(신설 2020. 1. 17.)(개정 2020. 12. 22.)

총괄기관	부설연구기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	아세안연구원, 중남미지역원, 지중해지역원, 국제통상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외국어연구소, 다문화연구소, 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 사회안전연구소

<간서명>	김해진	이복수	정연승
-------	-----	-----	-----

## 변 경

[별표4] 부설연구기관(신설 2020. 1. 17.)(개정 2020. 12. 22., 2021. 00. 00.)

총괄기관	부설연구기관
<u>산학협력단</u>	지중해지역원, 중남미지역원, 아세안연구원,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통상연구소, 외국어연구소, 다문화연구소, 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 사회안전연구소, 미래융합기술연구소

- 3) 이복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신현상 행정지원실장이 퇴실하다>

□ 제4호 의안 : 부산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안)

-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기획처장은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제2차 추  
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아래 회계별 예산 요약

(단위:천 원)

구 분	2차 추경예산액	1차 추경예산액	증감액
등록금회계(A)	49,066,956	49,066,956	
비등록금회계(B)	117,262,139	38,060,482	79,201,657
내부거래제거(C)	500,000	500,000	
교비회계(A+B-C)	165,829,095	86,627,438	79,201,657

- 3) 윤수길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김요한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은 165,829,095,000원(등록금회계 49,066,956,000  
원, 비등록금회계 117,262,139,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이종문 기획처장이 퇴실하다>

□ 제5호 의안 :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1) 이사장은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지고등학교 행정실장에  
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정효채 행정실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

<간서명>	<u>정현진</u>	<u>이복수</u>	정연승
- 16 -			

2) 행정실장이 임용 절차를 거쳐 제청된 성지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아래 교원 면직 임용(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면직 임용 대상자

- 교원

임용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면직일	사유	비고
					정년퇴직	생물

※ 신규임용일자 : 1994.03.18.

- 기간제 교원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과목	임용일자	퇴직일자	퇴직구분	비고
							의원면직	
							의원면직	

3) 윤효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김요한 이사가 제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정효채 행정실장이 퇴실하다>

□ 제6호 의안 : 법인 정관 개정(안)

- 1)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

▶ 아래 주요내용

□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개편 및 직위 세분화

- [폐지] : 대외부총장,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안전방재관, 청해진사업단
- [부처명 변경] : 교학처 ⇌ 교무처, 진로취업처 ⇌ 학생진로처, 만오교육문화원 ⇌ 만오지역협력원
- 기타 직원 직위 세분화 및 정원 배정

□ 사립학교법 개정(개정일 2020.12.22.)에 따른 정관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반영
  - 이사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함
  - 감사원의 조사,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인 경우 징계 절차 진행 보류 및 징계의결기한

〈간서명〉	정효채	이복수	정연승
	- 17 -		

### 미포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강화
- 고등학교 교원이 성폭력 및 성범죄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
- 법 문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한 내용 반영
- 사립학교법 개정사유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정비

### ▣ 기타 정관 변경 내용

- 재산처분의 관할청 허가 사유 통합
- 개방이사 선임 규정 명확화
- 개방감사의 추천요청 기한 삭제
- 관련 법령(규정) 명확화
- 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추가
-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소집 가능 삭제
-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인원의 명확화
- 중복된 조항 삭제
- 사립학교법 내용으로 정관 보완
- 학교장에게 위임된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의 조정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p>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p> <p>② (생략)</p>	<p>제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2021.08.24.)</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대학교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li><li>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li></ol>	<p>제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대학교 :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li><li>2. 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li></ol>
<간서명>	정재민 이복수 정연승

현 행	변 경
<p>④ 제1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u>다른 회계에</u>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1.21., 2020.08.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u>사립학교법 시행령</u>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u>한한다.</u></li> </ol>	<p>④ 제1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u>다른 회계로</u>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1.21., 2020.08.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u>사립학교법 시행령</u>」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u>한정한다.</u></li> </ol> <p>[전문개정 2021.08.24.]</p>
<p><u>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u>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u>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u> (삭제 2021.08.24.)</p>
<p><u>제12조의 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u> ①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u>제12조의2(예산·결산의 제출 및 공개)</u> ①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공시 및 공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2021.08.24.)</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u> &lt;제1항 신설&gt;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 8인</li> <li>2. 감사 2인</li> </ol> <p>&lt;제2항 신설&gt;</p>	<p><u>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u>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 8명</li> <li>2. 감사 2명</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u>제23조(임원의 임기)</u>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u>1회에 한하여</u>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16.0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ol> <p>② (생략)</p>	<p><u>제23조(임원의 임기)</u>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u>한 차례만</u>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개정 2016.02.23., 2021.08.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간서명>	장수경	6) 복수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b>제24조의 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생략)</b></p> <p>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u>5인</u>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9.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평의원회 : <u>3인</u></li> <li>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u>2인</u></li> </ol> <p>③ - ④ (생략)</p> <p><b>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선임) ①</b>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u>재직이사</u>는 임기만료 3개월 전, <u>재직감사</u>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p> <p>② (생략)</p> <p>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20.1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u>자</u></li> <li>2. <u>사립학교법</u>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u>자</u></li> <li>3. - 6. (생략)</li> </ol> <p>④ 삭제</p>	<p><b>제24조의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u>5명</u>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9.16., 2021.08.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평의원회 : <u>3명</u></li> <li>2.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u>2명</u></li> </ol>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b>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u>재직이사는</u>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20.1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독교 교인(집사이상)으로서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u>사람</u></li> <li>2. 「<u>사립학교법</u>」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u>사람</u></li> <li>3. - 6. (현행과 같음)</li> </ol> <p>④ 삭제</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24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b>(개정 2006. 1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u>자</u></li> <li>2. <u>사립학교법</u>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소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li> <li>3. <u>사립학교법</u> 제54조의2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li> <li>4. <u>사립학교법</u>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li> <li>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li> </ol>	<p><b>제24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b>(개정 2006.1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u>사람</u></li> <li>2. 「<u>사립학교법</u>」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u>사람</u></li> <li>3. 「<u>사립학교법</u>」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u>사람</u></li> <li>4. 제59조의2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u>사람</u></li> <li>5.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u>사람</u></li> </ol> <p>[전문개정 2021.08.24.]</p>

<간서명>	정해리	이복수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u>반수 이상은</u>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u>4분의 1을</u>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1)</p> <p>③ (생략)</p> <p>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⑤ 감사 중 <u>1인은</u>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u>자라야 한다.</u></p> <p>⑥ 감사 중 <u>1인은</u>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u>추천한 자를</u>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9.16.)</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를</u> 임원으로 <u>선임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p> <p>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p> <p>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p> <p>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p>	<p>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u>반수 이상은</u>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u>4분의 1을</u>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1.)</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감사 중 <u>1명은</u>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u>사람이어야 한다.</u></p> <p>⑥ 감사 중 <u>1명은</u>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u>추천한 사람</u>(이하 "개방감사"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하고, 개방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9.09.16.)</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 대하여</u>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u>받아야 한다.</u>(개정 2006.11.21.)</p> <p>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p> <p>3. 교원으로 재직 중 제59조의2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p> <p>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지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p> <p>[전문개정 2021.08.24.]</p>
<p>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p>	<p>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 2021.08.24.)</p>
<p>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u>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u>(개정 2016.02.23.)</p> <p>② (생략)</p>	<p>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u>학교법</u> 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02.23., 2021.08.24.)</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u>다음의</u> 직무를 <u>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u>재산상황과 회계를</u> 감사하는 일</li> <li>2. (생략)</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li> </ol>	<p>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u>다음 각 호의</u> 직무를 <u>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u>재산 상황과 회계를</u> 감사하는 일</li> <li>2. (현행과 같음)</li> </ol>

<u>&lt;간서명&gt;</u>	<u>정해진</u>	이) <u>복수</u>	정연승
-	21	-	

현 행	변 경
<p>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p> <p>4. (생략)</p> <p>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p> <p>4. (현행과 같음)</p> <p>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b> ① 이사장은 <u>당해</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09.16)</p> <p>② 이사는 감사 또는 <u>당해</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u>교원</u>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09.16.)</p> <p>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u>당해</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u>교원</u> 기타 <u>직원을 포함한다</u>)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p>	<p><b>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b>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09.16)</p> <p>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09.16)</p> <p>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u>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u>)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09.16.)</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b> ① 이사회는 <u>이사로</u>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b> ① (생략)</p> <p>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제3항 신설&gt;</p>	<p><b>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b> ① 이사회는 <u>이사로</u>서 구성한다.(개정 2021.08.24)</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p> <p>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b>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 2. (생략)</p> <p>&lt;3호 신설&gt;</p>	<p><b>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b>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기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p> <p>[전문개정 2021.08.24.]</p>

<u>&lt;간서명&gt;</u>	<u>정하연</u>	<u>이복수</u>	정연승
- 22 -			

현 행	변 경
<p>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u>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이사 전원이 <u>집합되고</u>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u>요구한 때에는</u> 예외로 한다.</p>	<p>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u>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u>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u>요구하였을 때는</u> 예외로 한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제35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u>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u>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② <u>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u>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5조(이사회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u>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u>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개정 2006.11.21.]</p> <p>[전문개정 2021.08.24.]</p>
<p>제35조의 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② (생략)</p> <p>&lt;제3항 신설&gt;</p>	<p>제35조의2(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회의록과 회의조서 작성 및 공개, 간인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을 따른다.(신설 2021.08.24.)</p>
<p>제35조의 4(대학평의원회의 조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21., 2020.08.25.)</p> <p>1. - 4. (생략)</p> <p>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p> <p>6. &lt;신설&gt;</p> <p>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1.21., 2020.08.25., 2021.08.24.)</p>	<p>제35조의4(대학평의원회의 조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동문 1명</p> <p>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p> <p>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간서명>	정 해진	이복수	정 연승
-------	------	-----	------

현 행	변 경
2006.11.21)  ③ - ④ (생략)  <b>제40조(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u>찬성으로</u>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6.)	다.(개정 2006.11.21.,2021. 08.24.)  ③ - ④ (현행과 같음)  <b>제40조(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u>동의를 받아</u>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9.16.,2021.08.24.)
<b>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b>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09.16.,2016.02.23.)	<b>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b> <u>해산한 학교법인의</u>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교육부장관에게</u>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다른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09.16., 2016.02.23.,2021.08.24.)
<b>제43조(임용)</b>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의 총장은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u>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2013.08.27.,2016.02.23.)  ② - ⑦ (생략)	<b>제43조(임용)</b>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의 총장은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은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u>그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u>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21.,2013.08.27.,2016.02.23., 2021.08.24.)  ② - ⑦ (현행과 같음)
<b>제43조의 2(기간제교원)</b>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b>제43조의2(기간제교원)</b>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u>교원자격증을</u>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1.08.24.)
② (생략)  ③ 고등학교의 <u>기간제 교사</u>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u>보한다</u> . 단 6개월 미만의 <u>기간제 교사</u> 임용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02.27.)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학교의 <u>기간제교원은 해당</u>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u>임용한다</u> . 단 6개월 이하의 <u>기간제교원</u> 임용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02.27,2021.08.24.)
<b>제44조(휴직의 사유)</b>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b>제44조(휴직의 사유)</b>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서명>

정 해린

이복수

정 연승

현 행	변 경
<p>경우를 포함한다)</p> <p>2. <u>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u></p> <p>3. <u>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u></p> <p>4. <u>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u></p> <p>5. <u>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u></p> <p>6. <u>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u></p> <p>7. <u>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7.02.23.)</u></p> <p>7의2. (생략)</p> <p>8. <u>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u></p> <p>9. <u>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u></p> <p>10. <u>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u></p> <p>11. <u>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u></p> <p>12. <u>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u></p> <p>13. <u>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02.23.)</u></p> <p>[전문개정 2016.02.23.]</p>	<p>경우를 포함한다)</p> <p>2. 「<u>병역법</u>」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되거나 소집된 경우</p> <p>3. <u>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u></p> <p>4. <u>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u></p> <p>5. <u>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하게 된 경우</u></p> <p>6. <u>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u>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호의 <u>재외교육기관</u>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u></p> <p>7. <u>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17.02.23.)</u></p> <p>7의2. (현행과 같음)</p> <p>8. <u>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u></p> <p>9. <u>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10. <u>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u></p> <p>11. 「<u>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p> <p>12. (삭제 2021.08.24.)</p> <p>13.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신설 2017.02.23.)</p> <p>[전문개정 2016.02.23., 2021.08.24.]</p>
<p>제45조(휴직의 기간) (생략)</p> <p>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p>	<p>제45조(휴직의 기간) (현행과 같음)</p> <p>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p>

<간서명>	정해진	이복수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연장할 수 있다. 다만, <u>공무원연금법</u>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3.)</p> <p>2. - 9. (생략)</p> <p>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u>전임기간으로 한다.</u></p> <p>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국회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12.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u>1회에 한한다.</u>(신설 2017.02.23.)</p>	<p>연장할 수 있다. 다만, 「<u>공무원재해보상법</u>」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3., 2021.08.24.)</p> <p>2. - 9. (현행과 같음)</p> <p>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u>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u>(개정 2021.08.24.)</p> <p>11. (삭제 2017.02.23.)</p> <p>12.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u>한 차례에 한정한다.</u>(신설 2017.02.23.)(개정 2021.08.24.)</p>
<p><b>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b>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16.02. 23.)</p> <p>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u>불량한 자</u>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u>심히 불성실한 자</u></p> <p>2. 징계의결이 <u>요구된 자</u></p> <p>3. 형사사건으로 <u>기소된 자</u>(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p> <p>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u>검찰</u>,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u>조사</u>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u>어려운 자</u>(신설 2016.02.23.)</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u>소멸된 때에는</u>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③ (생략)</p> <p>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p>	<p><b>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b>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9.16., 2016. 02.23.)</p> <p>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u>매우 불량한</u>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u>매우 불성실한 경우</u></p> <p>2. 징계의결이 <u>요구증인 경우</u></p> <p>3. 형사사건으로 <u>기소된 경우</u>(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p> <p>4. 금품비위, 성범죄 등 「<u>사립학교법 시행령</u>」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u>검찰</u>,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u>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u>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u>어려운 경우</u>(신설 2016.02.23.)</p> <p>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u>소멸되면</u>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9.09. 16., 2016.02.23.)</p> <p>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p>

<간서명>	정 해리	이복수	정 연승
- 26 -			

현 행	변 경
<p>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⑥ 제1항 제1호와 <u>제2호, 제3호</u> 또는 제4호의 직위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⑦ (생략)</p>	<p>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⑥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6, 2016.02.23.)</p> <p>⑦ (현행과 같음)</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b>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u>사립학교법</u>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u>당하지 아니한다</u>. 다만, 학급, 학과(부), 교육 및 연구관련 기구 또는 직제 등의 <u>개폐</u>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21., 2013.04.25)</p> <p>② - ③ (생략)</p>	<p><b>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b>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u>받지 아니한다</u>. 다만, 학급이나 학과(부),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구 또는 직제 등의 <u>개편</u>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9.21., 2013.04.25., 2021.08.24.)</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50조의 2(명예퇴직 수당)</b>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p>	<p><b>제50조의2(명예퇴직 수당)</b>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b>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p>	<p><b>제50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b>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1.08.24.)</p>
<p><b>제50조의 4(면직)</b>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u>당해 교원을</u>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생략)</p> <p>2. 근무성적이 <u>극히</u> 불량할 때</p> <p>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p>	<p><b>제50조의4(면직)</b>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근무성적이 <u>매우</u> 불량할 때</p> <p>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p>

<간서명>	정해진	이복수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고 이를 <u>방조한 때</u></p> <p>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u>지도·선동한 때</u></p> <p>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u>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u></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임용된 때</u> (개정 2019.09.01.)</p>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본조 신설 2016.02.23.]</p>	<p>이를 <u>방조하였을 때</u></p> <p>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u>지도·선동하였을 때</u></p> <p>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u>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u></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임용되었을 때</u>(개정 2019.09.01.)</p> <p>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본조 신설 2016.02.23.]</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b>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대학교의 경우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u>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1., 2016.02.23., 2019. 07.01.)</u></p>	<p><b>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b>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대학교의 경우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u>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1., 2016.02.23., 2019.07.01., 2021.08.24.)</u></p>
<p><b>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b>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u>6인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2)</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이사장이 임명한다</u>. 다만, 학교법인의 <u>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개정 2016. 08.25., 2019.09.01.)</p> <p>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u>5인</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u>1인</u></p> <p>가. - 라.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 2. (생략)</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u>사유로</u>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 5. (생략)</p>	<p><b>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b>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u>6명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2)</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다만, 학교법인의 <u>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개정 2016.08.25., 2019.09. 01.)</p> <p>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u>5명</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u>1명</u></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u>사유로</u>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 5. (현행과 같음)</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59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b>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p>	<p><b>제59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b>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교원의</p>

<b>&lt;간서명&gt;</b>	<b>장 해진</b>	<b>이복수</b>	<b>정 연승</b>
-	- 28 -		

현 행	변 경
<p>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9.10. 18.)</li> <li>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u>태만히</u> 한 때</li> <li>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li> </ol> <p>② (생략)</p> <p>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02.07.)</p> <p>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본조 신설 2019.09.01.]</p>	<p>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9.10. 18.)</li> <li>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u>게을리</u>하였을 때</li> <li>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 02.07.)</p> <p>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u>뉘우치게</u> 한다.[본조 신설 2019.09.01.]</p> <p>[전문개정 2021.08.24.]</p>
<p>제59조의3(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li> <li>2. (생략)</li> </ol>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때에는</u>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u>기소</u> 중인 때</li> <li>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li> </ol>	<p>제59조의3(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li> <li>2. (현행과 같음)</li> </ol>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u>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u>기소</u> 중인 경우</li> <li>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li> </ol>

<간서명>	정 해인	이 복수	정 연승
- 29 -			

현 행	변 경
<p>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u>수사 중인 때</u></p> <p>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u>조사 중인 때</u></p> <p>[본조 신설 2020.02.07.]</p>	<p>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u>수사 중인 경우</u></p> <p>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u>조사 중인 경우</u></p> <p>[본조 신설 2020.02.07.]</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b>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u>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u></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u>회무를 통리한다.</u></p> <p>③ <u>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④ (생략)</p>	<p><b>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b>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u>업무를 총괄한다.</u></p> <p>③ <u>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b> &lt;제1항 신설&gt;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9.01.)</p> <p>&lt;제2항 – 제4항 신설&gt;</p>	<p><b>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b>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u>받았을 때에는</u>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9.01.)</p> <p>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p> <p>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63조(제척사유)</b>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p>	<p><b>제63조(제척사유)</b>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p> <p>(개정 2021.08.24.)</p>

<간서명>	정 해리	이복수	장연승
-			

현 행	변 경
<p><b>제63조의 3(징계의결의 요구)</b>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9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p> <p>[본조 신설 2016.02.23.]</p>	<p><b>제63조의3(징계의결의 요구)</b>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9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2021.08.24.)</p> <p>[본조 신설 2016.02.23.]</p>
<p><b>제63조의 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b>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3.)</p>	<p><b>제63조의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b>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6.02.23.,2021.08.24.)</p>
<p><b>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b>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b>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b>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전문개정 2021.08.24.]</p>
<p><b>제65조(징계의결)</b>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 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p> <p>③ - ⑤ (생략)</p>	<p><b>제65조(징계의결)</b>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08.24.)</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 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정하는 징계기준, 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2021.08.24.)</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65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b>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p>	<p><b>제65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b>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p>

<간서명>	정 해민	이 복수	정 연승
-------	------	------	------

현 행	변 경
<p>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 2016.02.23.]</p>	<p>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9.01.)</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 2016.02.23.]</p> <p>[전문개정 2021.08.24.]</p>
<p><u>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u></p> <p><u>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정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징계양정은 공적 등에 따라 감경하거나 비위행위의 경합과 시기에 따라 가중할 수 있으며,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징계의 감경과 가중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2.09.21.]</p> <p>[전문개정 2013.04.25.](개정 2016.02.23.)</p>	<p><u>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삭제 2021.08.24.)</u></p> <p><u>제66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삭제 2021.08.24.)</u></p>
<p><u>제6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 21.,2016.02.23.,2019.09.01.)</u></p> <p>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16.02.23.)</p> <p>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16.02.23.)</p>	<p><u>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21.,2016.02.23.,2019.09.01.)</u></p> <p>1. (삭제 2021.08.24.)</p> <p>2. (삭제 2021.08.24.)</p>

<간서명>	정기원	이복수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02.23.)</p> <p><u>&lt;제2항 신설&gt;</u></p> <p>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9.21.)</p>	<p>3. (삭제 2021.08.24.)</p> <p>② 제62조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p> <p>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9.21.) [전문개정 2021.08.24.]</p>
<p><u>&lt;신설&gt;</u></p>	<p>제66조의4(고등학교 보직 등 관리) ① 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p> <p>② 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8.24.]</p>
<p>제90조(총장 등) ① - ② (생략)</p> <p>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의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2021.08.24.)</p> <p>④ 교학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05., 2014.</p>	<p>제90조(총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교에 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임부총장의 자격 및 임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04.27.,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 2021.08.24.)</p> <p>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장, 특임부총장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05., 2014.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p>

<u>&lt;간서명&gt;</u>	<u>정 해진</u>	<u>이 복수</u>	정연승
--------------------	-------------	-------------	-----

현 행	변 경
<p>07.24., 2015.08.20., 2015.09.22., 2015.12.18., 2017.02.23.)</p> <p>⑤ (삭제 2014.07.24)</p> <p><b>제92조(하부조직) ① (생략)</b></p> <p>② 대학교에 비서실, 행정지원실, 대외협력홍보실, 감사실, 산학협력단, 만오교육문화원, 안전방재관, 교학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진로취업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IPP사업단, 청해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6.03.30., 2016.07.22., 2017.06.22., 2017.09.22.,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20.02.07., 2020.12.22., 2021.02.04.)</p> <p>③ 처장,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안전방재관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 산학협력단장, 각 사업단 단장, 원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단, 처장, 실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2., 2015.12.18.,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19.09.01., 2020.02.07.)</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전문개정 2015.08.20.]</p> <p><b>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b>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22.)</p>	<p>2017.02.23., 2021.08.24.)</p> <p>⑤ (삭제 2014.07.24)</p> <p><b>제92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대학교에 비서실, 비서실, 만오지역협력원, 교육사업단, 산학협력단, 교무처, 기획처, 입학관리처, 학생진로처/대학일자리센터, 국제교류처, 행정지원실, 대학혁신사업단, 특수외국어사업단, IPP사업단, LINC+사업단을 둔다.(개정 2015.09.22., 2015.12.18., 2016.03.30., 2016.07.22., 2017.06.22., 2017.09.22.,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20.02.07., 2020.12.22., 2021.02.04., 2021.08.24.)</p> <p>③ 처장,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산학협력단장, 각 사업단 단장, 원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단, 처장, 실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2., 2015.12.18., 2018.08.24., 2019.02.13., 2019.07.01., 2019.09.01., 2020.02.07., 2021.08.24.)</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전문개정 2015.08.20.]</p> <p><b>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b>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9.22., 2021.08.24.)</p>
<p><b>제94조(부속시설) ① (생략)</b></p> <p>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과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 및 부기관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2.02.02., 2014.07.24., 2015.09.22., 2016.07.22., 2016.08.25.)</p> <p>③ (생략)</p> <p>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원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p>	<p><b>제94조(부속시설)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과 부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 및 부기관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2.02.02., 2014.07.24., 2015.09.22., 2016.07.22., 2016.08.25., 2021.08.24.)</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선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22., 2021.08.24.)</p>

<간서명>	정→나리	이복수	정연승
- 34 -			

현 행		변 경	
<b>[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표</b>		<b>[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표</b>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직급	정원수	직급	정원수
총 계	108	총 계	108
일반직 계	107	일반직 계	107
G1(책임행정관)	26	P1(책임관리관)	10
G2(선임행정원)	54	P2(책임행정관)	16
G3(담당행정원)	27	P3(선임행정관)	24
별정직 계	1	P4(주무행정관)	30
		P5(선임담당관)	27
		P6(주무담당관)	1
<b>[별표 3] 학교 일반직원의 정년</b>		<b>[별표 3] 학교 일반직원의 정년</b>	
구분		구분	
부산외국어 대학교	일 반 직	정년	
		G1 (책임행정관)	만60세
		G2 (선임행정원)	만60세
		G3 (담당행정원)	만60세
부 칙(개정 2021.08.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66조의4의 시행일은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659호, 2020.12.22.) 제1조를 따르고,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시행일은 2021.09.01.로 한다.			
② (적용례) 제6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는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7659호, 2020.12.22.) 제2조를 따른다.			

3) 정연승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 기타

- 1)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의 대표 간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다.
- 2) 윤효선 이사는 이사장, 이복수 이사, 그리고 정연승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하수권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저래김	이복수	정연승
-------	-----	-----	-----

3) 아울러 회의록 공개 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및 법인 주요 경영에 관련되는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오지섭 이사 동의와 하수권 이사 재정 및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7. 폐회선언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16시 10분에 2021학년도 제5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21년 8월 24일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장 정해린 

이사오지섭 

이사윤효선 

이사이복수 

이사윤수길 

이사하수권 

이사김요한 

이사정연승 